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7. 6 선고 2022가단764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6. 8.

판 결 선 고 2022. 7. 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지분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12. 14.자 상속재산 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취소한다.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1. 2. 3. 접수 제19585호로 마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4. 3. 13.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(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728),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망 D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12년경부터 치매를 앓게 되었고 동거하던 자녀인 피고로부터 부양을 받아 왔다.

다. 망인은 2020. 12. 14.경 사망하였고, 그 공동상속인들(피고, E, F, C)이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2021. 2. 3.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~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.

3. 판단

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,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(민법 제1008조)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(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),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피고가 오랫동안 망인과 동거하며 망인을 부양해 왔고, 이러한 사정과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 등을 감안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E, F, C가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이 사건

분할협약에 따른 재산분할결과가 C에 대하여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
과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, 그 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
타당하다.

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
않는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박광민



별지 목록

2021카단100574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
아파트

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
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
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

1층 391.14㎡

2층 462.84㎡

3층 462.84㎡

4층 462.84㎡

5층 462.84㎡

6층 462.84㎡

7층 462.84㎡

8층 462.84㎡

9층 462.84㎡

10층 462.84㎡

11층 462.84㎡

12층 462.84㎡

13층 462.84㎡

14층 462.84㎡

15층 462.84㎡

16층 462.84㎡

17층 462.84㎡

18층 462.84㎡

19층 462.84㎡

20층 462.84㎡

지하1층 479.94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

3/5

3/5



2층 호

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
99.7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
대 54,225.4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54,225.4분의 48,8088

순위번호4 공유자 의 지분 11분의3

